



# 항만공사(PA)법 개정법률 2007년 4월부터 시행

## BPA 외국 컨테이너터미널 사업 및 운영 가능

부산항만공사(BPA)가 아랍에미리트연합의 DPW사 등과 같은 국제적 수준의 복합 항만 건설 및 항만 배후시설 운영회사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췄다. 항만공사(PA)법 개정으로 외국의 터미널 사업 및 운영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또 항만배후단지와 복합화물터미널 등 항만부 대시설의 조성과 관리·운영과 관련한 사업을 BPA가 직접 수행할 수 있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항만공사(PA)법’ 개정안이 지난 9월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0월중 이 개정안을 공포하고 2007년 4월께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BPA는 9월중 해양부 GTO팀과 공동으로 러시아 보스토치니, 블라디보스토크 등 극동 아시아 지역에서 항만건설이나 부두운영을 목적으로 한 투자 가능성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BPA는 지난 6월27일, 28일 양일간 이곳에서 항만시설 답사를 겸한 부산항 마케팅을 펼친 바 있다.

BPA는 시베리아횡단철도(TSR)의 시발점인 러시아 극동지역의 투자 수익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면 국내 건설사, 선사 등과 글로벌 터미널운영 컨소시엄을 이뤄 적극적인 진출을 추진, 부산항 중심의 글로벌 항만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이다.

BPA는 앞으로 해외투자를 본격화해 홍콩의 허치슨, 싱가포르 PSA, 아랍에미리트연합 DPW 등과 같은 글로벌 터미널운영사로 발전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BPA는 9월13일 해양수산부의 ‘글로벌 터미널운영사 육성방안’ 연구용역 결과가 발표되면

현대산업개발, 삼성건설, 한진해운, 대한통운 등 11개 건설·해운·하역업체와 해외 항만투자를 위한 컨소시엄을 결성하는 방안을 해양부와 본격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9월 발간될 예정인 ‘부산항 비전 2020 계획’ 최종 용역보고서에도 북한과 러시아, 중국, 인도, 동남아, 아프리카 등 해외 7개 지역 진출을 통한 BPA의 글로벌 경영계획을 담기로 했다. 또 이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수행하던 항로, 정박지, 선회장 등에 대한 관리권을 앞으로는 PA가 직접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선사 등 항만이용자들은 항만시설 사용료 분리 남부 등의 불편에서 벗어나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현재는 1개 항만에 1개의 항만공사(PA)를 설립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항만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 2개 이상의 인접한 항만을 관할하는 PA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부산항의 항로와 정박지, 선회장 등 수역시설에 대한 관리권이 내년 4월께 해양수산부에서 부산항만공사(BPA)로 이관된다.

이와 함께 부산항만공사는 앞으로 해외항만 개발을 비롯해 항만배후단지, 복합화물터미널, 신항만 건설 등을 직접 수행할 수 있게 된다.

BPA 관계자는 “앞으로 해외투자를 본격화해 홍콩의 허치슨, 싱가포르 PSA, 아랍에미리트연합 DPW 등과 같은 글로벌 터미널운영사로 발전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며 “올해가 BPA 일 등 글로벌 터미널운영사 도약을 위한 원년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내다봤다.